

「인삼 제조기업 신상품 개발 지원」 사업 모집공고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는 금산 인삼·약초제품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상품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 제조기업 신상품 개발 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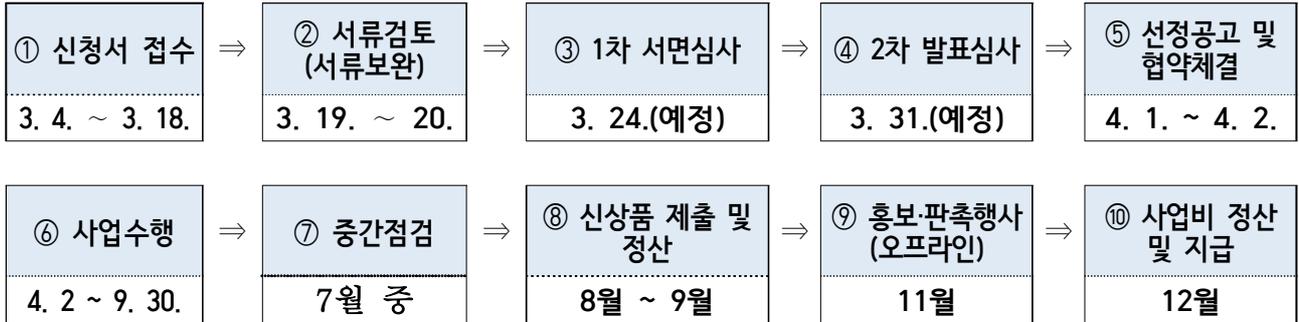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직인생략

1 사업 개요

- 1) 사업명 : 인삼 제조기업 신상품 개발 지원
- 2) 모집기간 : 2026. 3. 4.(수) ~ . 18(수) / 15일간 ※ 서류 보완 : 3. 19. ~ 20.
- 3) 추진기간 : 2026. 3. ~ 12. (10개월)
 - (1) 신상품 제출 : 8. 31.(월)까지
 - (2)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9. 30.(수)까지
 - (3) 사업비 정산 및 지급 : 제출일로부터 12월
- 4) 지원대상 : 금산군 인삼·약초 제조가공업체(소공인 및 중소기업)
※ 인삼 및 약초를 활용하여 신규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금산 관내 제조기업
- 5) 선정규모 : 18개사 내외
- 6)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2,000천원(자부담 포함) ※ 부가세 제외
※ '23년부터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동일 사업 선정 횟수에 따라 자부담률 차등 적용

7) 지원내용 : 신상품 개발에 직접 연관(디자인·포장재·제형·성상·용도·편의성)이 있는 사업비

8)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세부 내용

1) 개발내용 : 인삼·약초를 활용한 상품의 신규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소재융합, 레시피 개발, 품질, 포장재, 디자인, 용기, 제형 등의 비용지원

2) 개발범위

지원 범위	지원 내용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약초를 활용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음료, 디저트, 소스 등) · 인삼·약초 유래 성분을 적용한 화장품, 생활소비재 등 비식품 · 인삼·약초 소재의 기능, 기호성, 활용성을 확대하는 소비재 <p>※ 인삼 활용 요소가 명확하지 않은 단순 제품은 제외</p>
간편·소비자 맞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포장, 소용량 등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형태 · 간편식, 밀키트 식품 또는 간편 사용형 생활소비재
목적·특화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약초를 활용한 특정 목적대상 맞춤형 제품 · 다이어트, 이너뷰티, 키즈, 펫 전용 제품
포장·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편의성, 안전성, 정보 인지성 향상을 위한 용기 <p>※ 기존 제품의 단순 외관 변경, 색상, 라벨 교체 등 제외</p>

3) 사업비 편성 : 업체당 최대 22,000천원(자부담 포함) ※ 부가세 제외

구분	자부담 비율	지원금	자부담	비고
신규 업체	10%	19,800천원	2,200천원	'23년부터 동일사업 선정 이력에 따라 차등 적용 (사업신청서 내 체크 必) ① '23 인삼제품 상품성 개선 사업 ② '24 인삼제조기업 신상품 개발 판매지원사업 ③ '25 금산인삼약초 신상품 개발 지원사업
1회 선정	30%	15,400천원	6,600천원	
2회 이상 선정	50%	11,000천원	11,000천원	

4) 사업비 사용기준

구분	내용
재료구입비	· 인삼 원료를 제외한 제품 개발 원료, 부자재
외주비	· 외주 용역비(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 가공비)
시험분석비	· 품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
불인정항목	· 인삼 원료 및 기존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구입비 · 기존 제품의 단순 개선, 리뉴얼, 재포장 비용 · 마케팅, 홍보, 광고 및 판촉 관련 비용 일체 · 기업 내부 인건비,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일체 · 장비, 기계 구입비 및 자산성 물품 구입비 · 임차료, 공과금, 통신비 등 일반 운영경비 · 회의비, 판촉물(사은품) 제작비 등 직접 개발과 무관한 비용 · 부가가치세, 각종 세금 및 수수료 ·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집행한 비용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1) 접수기간 : '26. 3. 4.(수) ~ 3. 18.(수) 17:00까지 제출(시간엄수)
- 2) 접수방법 : 이메일 및 현장접수
- 3) 접수처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1층) 산업진흥팀
- 4) 신청문의 : 산업진흥팀 ☎ 041-750-1622

1) 평가위원회 구성

- (1) 진흥원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 후보자 POOL」 활용
- (2) 모집분야 및 규모 : 15명(평가위원 구성의 3배수)
- (3) 평가위원 선정 : 사업 신청자의 고유번호 추첨을 통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경력자 순으로 선정 후 비공개 통보(우선 5, 예비 2)

※ 추첨된 위원의 참석여부 확인 후 평가위원으로 최종 확정

- (4)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금산군 거주자 또는 소재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퇴직자 포함)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함

2) 선정방법

- (1) 평가 방법 : 1차 서면 평가 후 2차 대면평가를 통하여 최종 선정

구 분	선정 절차 및 기준
서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보완)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완요청(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 및 미 보완 시 (탈락) · (반려)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1차 서면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내용) 사업계획서 심사(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개선제품의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 예산적정성 여부 심의 · (심의방법) 서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제출서류를 토대로 심의
2차 대면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심의내용) 사업계획서 심사(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개선제품의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 예산적정성 여부 심의 · (심의방법) 대면 발표 평가 / 제출서류를 토대로 질의응답으로 심의 * 최종 종합 평점은 대면평가 점수와 가점으로 산정

(2) 가·감점 사항

구 분	가점
① 신규 신청기업 (동일 사업 선정 이력 확인)	3점
② 전국 인삼제품 품평회 본선 및 수상 기업 (24년 ~ 25년 자료 제출)	1점
③ 소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제출 必	1점
④ 신규 창업자 및 가업 승계자 (20년~25년) - 사업자등록증 및 승계 확인 서류(가족관계 등)	1점
⑤ 25년 금산GAP인증 원료삼 구입 업체 - 매입내역, GAP인증서, 이체확인증	1점
⑥ 동 사업 중도포기 업체	-5점

※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7점 이내 가점을 부여하고 평가점수에 합산

(3) 동점자 우선순위 : 상품성, 시장성 평가 고득점 순

(4) 선정된 업체의 지원 취소 발생 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지원

3) 선정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상품성	- 제품 콘셉트 및 개발 목적의 명확성 - 인삼·약초 원료 활용의 적절성 및 차별성 - 제형, 성상, 편의성 등 제품 완성도	30
시장성	- 목표 시장 및 소비자 대상 구체성 - 유통, 판매 채널 계획의 현실성 -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	25
수익성	- 가격 설정 및 수익 구조 합리성 - 향후 매출 창출 가능성	25
예산 적정성	- 사업비 편성 내역 합리성 - 지원금, 자부담 구성 적정성	20
소 계		100점
가점사항	증빙자료 확인 가능한 항목에 한함 (가점사항 기재)	최대 7점
감점사항	'23년 ~ '25년 동 사업 중도 포기 업체에 한함	-5점
총 계	평가점수 + 가점 - 감점 = 최종 점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4) 선정제외 (※ 기준: 공고 게시일)

- (1) 휴 · 폐업 중인 기업
 - (2) 부정 및 불량인삼유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3) 인삼가공제품의 과대광고, 과다할인, 허위정보제공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
 - (4) 인삼 관련, 생산 · 가공 · 유통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5)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체
 -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 업체 선정 이후에도 상기사항을 포함한 기타 결격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7) 유관기관 등 동일 항목의 중복사업 선정 제외

5) 선정 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 진흥원 홈페이지 선정결과 공고

5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1) 제출 서류 체크 리스트(붙임 1)
- (2) 사업 신청서(붙임 2)
- (3) 사업 계획서(붙임 3) * 사업계획서는 10p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붙임 4)
- (5) 참여의사 협약서(붙임 5)
- (6)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사본
- (7)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 (8) 매출 증빙 서류('23년 ~ '24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신고서)

2) 별도 제출서류(해당 시)

- (1) 보유 지식재산 및 인증, 카달로그 등
- (2) 수출실적 또는 수출신고필증(23~25년)
- (3) 23~25년 동일사업 개발제품 사업화 현황 확인서(붙임 6)
- (4) 가점 증빙 서류

6 지원금 지급 및 정산

1) 지원금 확정 : 선정평가 후 최종 지원금 확정

2) 지원금 지급 : 사업종료 및 정산 서류 검토 후 사업비 지급

※ 협약 기간 준수 必 및 정산 시기 사전 승인 없이 변경 불가

※ 지원금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일반업체일 경우 업체명 또는 업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만 인정함.

※ 선정된 후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회결과 체납자는 지원금 미지급.

- **신상품 제출기한(8월 31일)까지 미제출시 사업비 지급 불가**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준수사항을 미 이행시 지원금은 미지급함
- 신청서 등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등)

- 붙임 1. 제출 서류 체크 리스트 1부.
2. 사업 신청서 양식 1부.
 3. 사업 계획서 양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양식 1부.
 5. 참여의사 협약서 양식 1부.
 6. 동일사업 개발제품 사업화 현황 확인서(해당 시) 1부.